

제439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시 2026년9월1일(화)

장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 가. 행정안전부 소관
-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다.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 라. 인사혁신처 소관
- 마. 경찰청 소관
- 바. 소방청 소관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증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 가. 행정안전부 소관
-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다.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 라. 경찰청 소관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4)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86)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61)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8)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59)

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11)

1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1)

1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2)

1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5)

1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6)

15.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7)

1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9)
1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31)
1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32)
19.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71)
2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44)
2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60)
2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201)
2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2)
2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5)
2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3)
2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8)
2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5)
2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62)
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92)
3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61)
3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3)
3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28)
35.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8)
3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38)
3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6)
4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35)
4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8)
4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625)
44.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56)
4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59)
4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62)
47.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96)
48.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38)
49.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5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3)
5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47)
5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33)
5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7)
55.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9)
56.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5)
57.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47)
58.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67)
59.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0.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6)
6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6)
6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8)
6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3)
6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8)
6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6)
6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03)
6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9.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44)(추가)
70.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61)(추가)

상정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7
 - 가. 행정안전부 소관
 -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다.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 라. 인사혁신처 소관
 - 마. 경찰청 소관
 - 바. 소방청 소관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7
 - 가. 행정안전부 소관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다. 10·29이대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라. 경찰청 소관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4)	12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86)	12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61)	12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8)	12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59)	12
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11)	12
1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1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1)	12
1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2)	12
1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5)	12
1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6)	12
15.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7)	12
1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9)	12
1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31)	12
1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32)	12
19.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71)	12
2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44)	12
2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60)	12
2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2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201)	12
2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2)	12
2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5)	12
2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3)	12

2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8)	13
2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5)	13
2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62)	13
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92)	13
3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61)	13
3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3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3) ...	13
3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28) ...	13
35.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3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8)	13
3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38)	13
3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3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6)	13
4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35)	13
4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8)	13
4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625)	13
44.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56)	13
4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59) ...	13
4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62)	13
47.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96)	13
48.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38)	13
49.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13
5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3)	13
5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47)	13
5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33)	13
5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54. 소방공무원 보건의 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7)	13
55.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9)	13
56.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5)	13
57.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47)	13

58.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67)	13
59.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60.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6)	13
6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6)	14
6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8)	14
6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6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3)	14
6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8)	14
6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6)	14
6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03)	14
6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22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해식 위원 외 1인 서면동의)	32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34
69.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44)	34
70.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61)	34

(10시29분 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새로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덕흠 부의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안녕하십니까? 충북 보은군 대추, 영동군 와인, 옥천군 묘목, 괴산군 절임배추의 고장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덕흠 위원입니다.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하게 돼서 행복한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합리적이고 또 온유하신 성품으로 평소 존경받고 계신 김영진 위원장님과 이해식 간사님 그리고 강명구 간사님을 모시고 일하게 돼서 더없이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안위가 정쟁이 없고 소통과 협치를 만들어 내는 그런 상임위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회부의장으로서 느낀 소통과 협치의 중요성을 되새기면서 우리 위원회가 주요 현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든든한 윤희유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간절한 목소

리가 실질적인 권리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임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석에 보은 대추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위장님이 애용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영진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해 주신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법률안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가. 행정안전부 소관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다.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라. 인사혁신처 소관

마. 경찰청 소관

바. 소방청 소관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가. 행정안전부 소관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다.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라. 경찰청 소관

(10시32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주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박주민 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및 소방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부차관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소관에 대하여는 주의 2건, 제도개선 20건 등 총 2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통합위원회 정책연구용역은 불용액이 많고 연구용역이 연말에 집중 발주되는 등 사업관리가 미흡하므로 기초·상시 연구과 신규 연구를 구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조기 발주를 통해 집행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사업은 지자체에 배분된 금액 중 실제 사용되지 않은 재원이 많고 운영 경비가 실제 지출액이나 잔액 확인·절차 없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장기 미집행 사업을 집중 관리하고 실제 소요액을 기준으로 운영경비를 지급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정보시스템 구축방식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하여 예산의 전용·불용이 발생한 점과 관련하여 향후 긴급재난지원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 검증절차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전용·이월·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결산자료상의 실집행액 및 불용액 금액과 국고보조금 반환 현황 자료상의 미수납액 금액에 큰 차이가 있어 해당 사업의 실집행액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주의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의 경우에는 시정 2건, 주의 5건, 제도개선 7건 등 총 14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위원장 국외출장과 관련하여 배우자 동행이 필요한 경우 별도 초청 여부와 공식 일정에서의 동행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사유와 내용을 결과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약 268억 원의 예비비가 불용된 점을 감안하여 비목별 편성액과 집행실적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예비비 요구 시 과거 공식선거의 집행실적과 실제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과다 편성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주의 4건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종료 및 사무실 임대차계약 만료 시 원상복구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 제3기 위원회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과 관련하여 편성목적에 부합하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사혁신처 소관에 대하여는 주의 1건, 제도개선 6건 등 총 7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사혁신처가 소송 배상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배상금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부서 운영경비를 3회 반복 전용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한 것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의 소송 및 배상 실적을 분석하여 배상금을 적정 규모로 계산하도록 주의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이 각각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퇴직 전·후 지원사업의 중첩과 관련하여 사업대상과 지원내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유사·중복을 조정하고 두 기관 간 역할분담 및 연계·성과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퇴직지원 체계를 재정

비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청 소관의 경우에는 주의 1건, 제도개선 12건 등 총 13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경찰청은 과거 계약실적과 조달가격, 예상, 낙찰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소요액을 정확히 추계하고 추경 증액 후 불필요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경찰차량 적기 조달과 관련하여 차량별 교체주기와 납품기간을 고려하여 발주를 조기에 추진하고 특정 업체의 납기지연이나 법적 분쟁이 전체 차량 도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게 계약 및 사업관리를 개선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청 소관에 대하여는 주의 2건, 제도개선 8건 등 총 10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소방청은 119 항공정비실 건립 사업에서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였는바 사업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서 119 항공정비실이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고, 통합정비체계 구축 일정에 맞추어 정비인력 확보와 장비 구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소방청은 국고보조금 교부 시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력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교부 전에 확인하고 사업 진도에 따라 보조금을 분할 교부하는 등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관리 절차를 강화하며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집행지연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의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상당히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신청한 위원님에 한해서 실시하고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기 때문에 토론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제2항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되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시정요구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요구나 부대의견과 관련한 세부적인 자구정리 그리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결산에 대해서 각 기관은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정책과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요구와 부대의견도 성실하게 조치하셔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기관장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민재 행정안전부차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 참석으로 차관이 참석하는 것으로 양당 간사 간 협의하여 정했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 박주민 결산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회계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결산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완 선관위사무총장직무대리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정 심의에 진력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신뢰받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상교 진화위 위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송상교**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중에도 2025회계연도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진실화해위원회는 결산 관련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들을 잘 참고하

여 정부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두환 이태원특조위 위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장 송두환 존경하는 김영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5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결산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철 소방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장 최용철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5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선관위와 진화위 관계자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법안소위에서 심사한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4)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86)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61)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8)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59)
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11)
1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1)
1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2)
1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5)
1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6)
15.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7)
1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9)
1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31)
1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32)
19.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71)
2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44)
2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60)
2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201)
2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2)
2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5)
2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3)

2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8)
2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5)
2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62)
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92)
3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61)
3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3)
3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28)
35.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8)
3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38)
3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6)
4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35)
4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8)
4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625)
44.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56)
4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59)
4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62)
47.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96)
48.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38)
49.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3)
5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47)
5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33)
5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4. 소방공무원 보건의 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7)
55.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9)
56.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5)
57.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47)
58.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67)
59.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0.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6)

6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6)

6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8)

6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3)

6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8)

6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6)

6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03)

6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47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68항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식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이해식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1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건영·이광희·이해식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유재산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분석·진단 및 총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의 신속한 복구 및 구호를 위하여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지방의회 동의 및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활용을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채현일·고동진·이달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농협, 수협, 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손실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금융기관 간 규제의 형평성을 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지역금고의 경우 회원이 아닌 자도 상근감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재보궐선거로 선임된 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일원화하여 상근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앙회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광희·이해식·양부남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지방자치법 일부개

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의 자치입법권 보장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통장 및 이장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 하며 둘째,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협약제도를 도입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무이관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안전부장관의 기록물 관리 총괄·조정 기능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관리 지원 기능을 정비하여 기록물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전문적 심의 및 관계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제고함으로써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지정기록물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기록물의 발굴과 보존·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부남·채현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전한 직무수행이 필요하거나 마약류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해 마약류 투약 여부에 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직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등 유포 행위에 대하여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구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강명구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강명구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공인재난관리사 시험 면제 범위를 제1차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로 구체화하는 내

용으로 시험 면제 대상자별로 제1차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지 그 범위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을 ‘기업재난관리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격 결격사유 및 사후관리 제도, 자격증 대여·알선행위에 대한 벌칙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관련 시험 합격자에 대해 자격증을 발급하는 재난안전 분야 국가자격증에 대여 알선 행위에 대한 벌칙 수준을 고려하여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기업재난관리사를 기술인력으로 두는 사업자인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결격사유에 비례하여 기업재난관리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선 및 무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별 법률의 보험 또는 공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보험이나 공제 계약의 체결 거부 뿐만 아니라 해제·해지 등에 대해서도 제안하도록 하고 해당 규정을 이 법 시행 당시 가입된 보험 또는 공제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추가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춘생 의원과 이해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7년 9월 16일로 법률에 병시하여 동 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호영 의원, 김성희 의원, 서범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재범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활용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며 경찰공무원이나 운전면허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경찰청장에게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운전에 장애가 있는 질환자가 수시 적성검사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소방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지속적인 협의를 도모하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의 명칭을 시·도지사협의체로 명확히 하고 이 법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정현 의원, 채현일 의원 그리고 본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통령 또는 소방청장이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도 소방청 및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소방준감 또는 소방감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준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소방간부후보생’, ‘소방학교’ 용어를 각각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와 ‘교육훈련기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춘생 의원, 양부남 의원, 정점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구의 고령화로 의용소방대원의 모집이 어려운 농산 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현재 65세인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조례가 정한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춘생 의원, 박정현 의원, 차규근 의원 등 4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법상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되어 있는 산불의 예방·진압 활동을 소방 고유의 ‘소방활동’으로 규정하여 산불 발생 시 소방 당국이 한층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님 모두 법률안 심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전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신청한 위원님들에 한하여 실시하고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개별 법률안 의결에 앞서 오늘 상정된 안전 중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들은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축조심사를 거친 점을 고려하여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및 9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0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8건의 법률안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1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22항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부터 31항까지 이상 9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32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및 제3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35항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및 제37항 이상 2건은 이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38항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및 제4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41항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항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4항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5항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6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7항 및 제48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49항 10·29이대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0항부터 52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53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4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5항부터 제58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59항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0항부터 제62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63항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4항부터 제67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68항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는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 공공협약제도 도입 등 지방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산불대응활동을 소방 고유의 소방활동으로 규정해 초동 대응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소방기본법 개정안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촘촘히 보호하고 국가·지방 행정사무의 체계를 개선하는 다수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여야 위원들의 협조와 노력, 심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히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차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존경하는 김영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 19건을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법률안이 시행되면 지방정부 상호 간 협약 근거가 마련되는 등 지방자치체도가 지역 현장에 맞게 개선되고,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제도 정비 등으로 재난관리 현장의 전문성과 대응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이해식 제1소위 위원장님과 강명구 제2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소위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부는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들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감사합니다.

다음, 송두환 이태원특조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장 **송두환** 존경하는 김영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 그리고 유가족, 피해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새기면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가 주어진 과업을 완결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법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법안을 토대로 공직사회의 마약류 유입을 차단하고 공무원의 스토킹이나 음란물 유포에는 엄정히 대응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의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경찰공무원 등이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불법 주정차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치안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철 소방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장 **최용철**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4개의 법률안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법안 심사에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법안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1시13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에 관련해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만 금일 회의 중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상정을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이 있으신데요.

이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69항 및 제70항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 그전에 제가 다른 의사일정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의사진행발언이요?

○권영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권영진 위원님.

○권영진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오늘 우리 정기회가 시작되는 첫날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오전에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해야 되는 것 때문에 열립니다. 사실 정기회 시작되는 개회식이 오후에 있는데 오전에 상임위는 잘 열리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까 윤호중 장관께서 불참하는 이유가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국회 상임위원회를 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2025회계연도 결산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해서 중요한 법안들이 의결되는 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오시지 않고 국무회의에 가신다는 게 저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간사님께서 많이 숙고하셨겠지만 간사님들이 이 부분을 승인해 주시고 위원장께서 양해해 주시는 것 자체가 저는 유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기관장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를 존중하고, 또 저희를 존중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기관장들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시고 오늘처럼 국무회의에 가기 위해서 국회 상임위원회에 장관이 오지 않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정춘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정춘생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영진 아십니까?

○정춘생 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박덕흠 위원님.

○박덕흠 위원 지금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의사일정을 잡을 때는 국무회의 있는 것도 이렇게 참고를 해 가지고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오후에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립니다. 하반기는 민생을 우선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간이 돼야 한다는 데 여야 의원님들 모두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장윤기 사건 그리고 또 제주 실종 사건은 아마 국민의 관심이 없었으면 자살로

끝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의 성급한 수사 태도 이런 부분은 외부의 견제가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요. 어쨌든 대한민국 치안을 총괄하는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여당인 민주당이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모르거나 또 일부러 외면하려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합의되지 않은 중수청법 개정안을 긴급 상정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가 되면 경찰의 부실 수사나 억울한 불송치 결정, 사건 공개기를 재검토하고 바로잡을 구제 수단이 사실상 차단된다는 데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또한 국민들도 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많이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지만 개정 과정에서 이런 이견은 묵살됐고 안타깝게도 개정안이 채 시행되기도 전에 경찰의 사건 무마, 외압·유착 의혹까지 이렇게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수사제도는 한 번 잘못 만들고 설계를 하면 국민들이 입은 피해는 정말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일정에 맞춰서 법 먼저 통과시키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예외조항을 두면서 무더기 법안을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억울함을 다투는 이런 형사사법제도가 정치권의 시간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기준으로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보완수사권을 전면 부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 정춘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뿐만 아니라 정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진 2분 안에 해 주세요.

○정춘생 위원 우선 행안부차관님, 작년에 우리가 5·18 보상법 개정안을 12월 달에 통과시켰습니다.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정춘생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보상……

○정춘생 위원 5·18 국가폭력에 의해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40년 넘게 상흔의 세월을 견디다가 증언을 시작하기 시작했지요. 진화위에서 이것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피해보상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법안이 통과된 지…… 지금 벌써 9월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7월 1일까지 시행령을 마련해야 되는데 정부가 아직 마련하지 못했어요. 이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제 최초로 증언하신 성수남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정춘생 위원 그 시행령 미룰 게 아니고 빨리 마련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그 문제점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해관계자와 여러 차례 면담을 하면서 이견을 좁혀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됐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임해서 그 부분 충분한 보상이라든지 이해관계, 유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정춘생 위원 의사진행발언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추가로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이 70년 만에 바뀌면서 굉장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많은데요.

그중에 특히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보완수사권이 폐지가 되면 사회적약자에 대한 피해자 보호, 사회적약자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들이 안 된다 그래서 아동학대 피해자 그리고 장애인학대 피해자, 노인학대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성범죄 대상 범죄피해자 그리고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전건 송치해서 검찰의 판단을 받아 보자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합의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담은 법안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다른 의견……

○위원장 김영진 다음에 하세요.

○정춘생 위원 아니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육성으로 하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춘생 위원 우리가 선거관리특조위를 통해서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해서 활동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여야가 합의가 됐었던 재검표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내지 못하고 그 활동이 종료가 됐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안위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라도 재검표를 실시해서 이 상황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적극적으로 의사일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김예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셨지요?

김예지 위원님 해 주시고 이상식 위원님하고 강명구 간사님, 이해식 간사님까지……

○서명옥 위원 저도……

○위원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전원 발언인데요?

먼저 해 주세요.

○**김예지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자료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체회의가 있다는 것을 공지를 받았고 이메일을 받기는 했지만 지금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전혀 내용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시의성이 있는 경우 올릴 때는 이 시의성에 대해서 여야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렇지 않은 법률 같은 경우에 자동으로 소위에 회부가 되게 됩니다, 상정되면.

그 절차와 관계없이 올라온 시의성을 다투는 법안인 만큼 위원 개개인이 이 법안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떤 검토보고 의견을 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파일을 받은 바가 없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내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 접근이 차단된 저의 경우에는 이 법안과 관련해서 상정에 있어서 공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예 알지 못합니다. 이것 또한 보완수사권, 중수청, 공수처 비롯하여 공감대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채 속결된 이 모든 논의와 일맥상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굉장한 유감을 표하고요.

앞으로 이런 시의성을 다투는 법안이 긴급 상정이 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숙지하는 위원이 있음을 확인하시고 위원장님께서 미리 이 점을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상정 법안에 대해서 저는 알 방법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춘생 위원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이 또한 장애인학대 범죄 등 중대범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7개의 중대범죄에 관해서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장애인 학대범죄 외에도 실제로 보완수사를 원하는, 장애인학대와 관계있지만 경제적 아니면 사비 아니면 기타 등등 학대에 준하지 않는 그런 범죄에 관해서도 사실 보완수사는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이 미비한 법안일 경우에는 실효성을 띄지 못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동감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이상식 위원** 오늘 새로 상정하는 중수청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시의성, 공감대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시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0월 2일 날 당장 중수청이 개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공감대에 대해서는 이 중수청 법안을 자체를 제정할 때 야당 위원들께서 사회적약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된다고 그렇게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주장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금 경찰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가장 염려하시는 바는 보완수사와 재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국민들의 권리

구제 방안이 어떠한지.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를 해 가지고 검찰로 송치하거나 송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검사가 판단하는데, 이것은 국민의 권리보호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중요한 흠결이 있다 이렇게 판단될 경우에 재수사를 하는데 그것을 경찰에서 동일한 수사기관에서 할 경우에는 그 신뢰성이 낮다고 해 가지고 중수청으로 보내 가지고 전혀 다른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한 80년 가까이 변하지 않았던 형사사법체계를 한 번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 정도의 법률적인 미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에 국민들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발휘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제출해야 되고 야당에서도 협조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서명옥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양부남 위원님, 강명구 간사님, 이해식 간사님.

서명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명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지금 상임위 상정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안, 왜 필요하지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괄 폐지해 놓고 그 폐지로 생긴 공백을 다시 개별법과 예외규정으로 메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는 형사법 제도 개혁이 아니라 졸속입법이나 부작용을 또 다른 입법으로 수습하는 모습이고 땀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땀질식 예외 입법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보완수사 제도 전반을 다시 재검토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 실종사건 잘 보셨지요?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보완수사 제도 전반을 다시 검토하시고 이제라도 정부와 여당은 인정해야 합니다. 중수청을 무리하게 출범하지 마시고 형사사법체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자체를 원상 복구하시고 중수청도 원점에서 재검토하셔서 정말 하루하루 매일 불안에 시달리는 대한민국 5200만 명 국민, 제발 살려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하고 간곡하게 시정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부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부남 위원** 먼저 제주 실종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확히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실종사건은 검사의 수사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보완수사권 유무, 수사개시권 유무와 상관없이 검사는 지금까지 경찰의 실종사건에 전혀 관여할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수사와 연결 지은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가 중대범죄수사청의 법을 일부 개정하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해서 공소청의 검사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어떠한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수청에 대해서 사기든 절도든 강도든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소청은 재수사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대수사청이 원래의 취지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잡사건을 처리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두면 원래 중대수사청의 범조항에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7대 범죄에 한해서 보완수사 요구 대상과 재수사 요구 대상을 7대 범죄로 한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자면 중대수사청의 원래 취지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렇고요.

절차적으로는 10월 2일 날 중수청이 발족을 합니다. 이 법을 개정을 해 놓지 않으면 중수청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다른 모든 사건에 치여서 보완수사하다가 원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 박상웅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박상웅 위원 오늘 국무회의 때문에 장관이 안 나오셔서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판단이 드는 게 오늘 같은 날 중수청법에 관련되는 이 개정안도 지금 상정하려고 하는데 중수청과 경찰청장 공백사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차관이 아니라 장관이 정치적인 또는 법률적인 답을 해야 합니다.

우선 경찰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지금 경찰청장 공백이 600일이에요, 600일. 이게 정상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주도에 실종사건이 터진 게 작년 5월이라는데 도대체 1년 4개월 동안 지금까지, 25년 3월부터 7월까지 일어났던 실종건수가 1048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중심이었던 부경장이 혼자 맡은 게 298건이에요. 28.46%를 혼자 감당을 했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시간에, 지금 600일 동안 경찰청장이 없는 거예요. 경찰청장 없이 우리 대행체제에서 지금 이렇게 이어 온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지금 현재 경찰과 중수청 문제는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김예지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굳이 이게 장애인이나 여성, 성범죄 이런 몇 가지, 일곱 가지를 묶어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거에 한정해 가지고 중수청의 보완수사,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하는 거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찰의 보완수사권 자체가 폐지되고 나면 현재의 경찰체제로는 방법이 없다, 방법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행안부장관의 명확한 정부 입장을 좀 듣고 싶은데 차관이 대신 와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중요한 행안위의 의사결정을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장관은 필히 참석을 해야 된다. 그걸 위원장님께 분명하게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박주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 모든 안전이 미리 고지가 되고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급한 일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변경의 대상이 되는 안건이 바로 그런 안건인 것 같습니다.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수청 개청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하게 어쩔 수 없이 이런 안건들이 상정됐을 것 같고 그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지만 제주도에서 발생한 이 안타까운 실종사건의 경우에는 수사권 조정과는 무관한 문제로 보여진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고 저희들이 계속 시도해 왔던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근대 형사소송법 발전의 방향 또 그 방향에서 노정하고 있는 대원칙을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질 때도 그때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경찰이 아닌 검사들이 수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예외적이고 한시적이어야 한다는 의사록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문을 작성한 적이 있어요,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그때 그 내용에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장기적으로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도록 만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된 고민들, 오래된 검토된 내용들을 반영하여 지금 이런 법들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상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통과시키겠다는 게 아닙니다.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에서 야당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들은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 위원** 위원장님, 강명구 간사님 하시기 전에 제가……

권영진 위원님부터 하시고……

○**위원장 김영진** 그렇게 하세요.

권영진 위원님, 이해식 간사님, 강명구 간사님까지 하고 의사진행발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님, 제주에서 실종으로 사망하신 고 장미란 씨의 사인이 됩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사체가 부패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다. 다만……

○**권영진 위원** 일주일 전에 청장 대행께서 우리 상임위에 오셔서……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아닙니다. 제가 말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만 목매사를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권영진 위원** 목매사입니까, 아니면 타살입니까? 아니,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서 입장이 뭐냐고요, 분명하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지금……

○**권영진 위원** 아니,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 일주일 전에 와서 제주청장에게 보고받은 바로는 목매사로 추정된다고 그렇게 여기서 명시적으로 얘기하셨잖아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런데 입장이 그대로 유지돼요? 오늘은 다르잖아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잠깐 들어 보세요.

부패로 인해서 사인이 불명하고 무엇이 진실인지는 아직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하겠다, 타살 가능성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청장 직무대행께서 일주일 전에 국회 상임위에 오셔서 목매사로 추정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청장 말을 뒤집은 것 아니에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러면 정황이 뭘니까? 오늘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제가 지난번 행안위에서 말씀드린 사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제주청장에게 현장 상황을 보고받은 바로 목매사로 추정된다는 그런 보고를 받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요. 국과수의 부검 결과 국과수에서는 사체가 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다, 다만 목매사를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또 국가수사본부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한 얘기는 정확한 부분은 국과수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영진 위원 직무대행님, 직무대행님이 그날 나오시면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국민들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얘기하니까 다 이게 목매사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만에 이게 뒤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제가……

○권영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직무대행께서 그날 나오셔서 다른 사망 원인의 여지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일주일 만에 경찰이 입장을 뒤집으니까 이것 자체가 경찰의 무능으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적 혼란과 걱정을 엄청나게 드리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청장 직무대행은 국민들께 혼선을 끼치고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돼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제가 그것은 입장을……

○권영진 위원 변명하실 게 아니란 얘기에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아닙니다. 경찰이 입장을 뒤집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추정된다는 보고를 받고 그것을 제가 전달해서 말씀을 드렸고 국가수사본부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얘기한 것은 국과수의 그런 감정 결과에 사체가 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사인은 확인할 수 없고 다만 목매사를 고려할 수 있다는 문구로 이렇게 의견이 왔는데 국가수사본부장은 앞의 부분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과수에서도 사체가 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사인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수사본부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좀 더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지 경찰이 입장을 뒤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마무리하시지요.

그러면 이해식 간사님, 강명구 간사님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중수청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때 필리버스터를 하셨기 때문에 중수청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예상은 했었습니다. 다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면서 9월 3일과 17일 양일간 본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했고 그 뒤에는 추석연휴가 있어 가지고 의사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시급하게 10월 2일 날 중수청이 출범해야 되고 그전에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당연히 마땅히 국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늘 이렇게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서 상정을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예지 위원님께서는 미리 법안 내용을 알지 못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숙려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기간이 충분히 주어졌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7대 민생범죄,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 이것은 널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왔고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전건송치를 계속 주장하셨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의사와도 부합되는 그런 법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조금 물려 주시고 상정하고 난 뒤에 소위나 전체회의에서 치열하게 반대하시고 토론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나 원내지도부의 입장을 조금 감안해 주셔서 의사일정에 합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강명구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구 위원 지금 온 나라가 난리입니다. 시끄럽고요. 경찰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고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찰청장 임명을 하지 않는 것, 저는 치안 공백을 방치하는 이 무책임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중수청법 개정안을 갖고 오셨는데요. 이게 취지가 그렇잖아요, 7대 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자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만 이 법안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무책임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수사를 다시 들여다보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 바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입니다. 이 보완수사권 경찰이 잘못 수사해 가지고 잘못 종결해도 검사가 바로잡을 수 있었던 것을 불과 한 달 전에 민주당이 이것 다 없애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7대 범죄 수사만큼은 다시 수사할 수 있게끔 만들자? 보완수사권 그대로 놔뒀으면요 이 법안 그냥 올라올 필요도 없는 그런 법안입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도요 사회적 약자라고 얘기하는 것, 민생범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대로 두자, 보완수사권 그대로 유지하자고 주장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은요 사회적 약자라는 범주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규정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곱 분야로 그냥 나눠 주셨는데 여기 안에서 보이스피싱으로 범죄를 당하신 분들 또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 이분들은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범죄 피해를 당하면 사회적 약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놔두고 7대 범죄수사만 보호하고, 다른 법은 그러면 어떻게 보호할 겁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요 민주당에서 7대 범죄 보완수사를 경찰이 아니라 중수청에 맡기겠

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는 일을 다시 경찰에게는 못 맡기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수사 권한을 몰아준 경찰 수사에 대해서 여당……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스스로가 못 믿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경찰들이 단독으로 종결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을 그냥 내버려두겠다, 그것은 보호하지 않겠다 이런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철회하시고요 복원하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개정안 취지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 법안으로는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상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예지 위원 저도 한말씀만……

○위원장 김영진 김예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셨으니까……

○김예지 위원 아니, 제가 정정 한번 해야……

○위원장 김영진 앞으로 의사진행발언은 한 번씩 하는 걸로 원칙을 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예지 위원 제 발언이 왜곡된 것에 대해서 정정할 기회를 주십시오. 제 발언이 왜곡되어서……

○위원장 김영진 왜곡이 됐다고요?

○김예지 위원 예.

○위원장 김영진 의사진행발언이라서……

○김예지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왜곡된 것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하시지요.

의사진행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사진행발언은 1인 1회에 한해서 같이 진행하고 특별한 경우는 간사님과 상의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김예지 위원 제 발언이 계속 왜곡이 되어서 다른 위원님들로부터 발화되었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약자들, 특히 장애인, 학대나 기타 범죄 등에 의해서도 경찰에서 해결할 수 없고 초동수사에서 오류가 생겼던 것을 보완수사로 해결해야 한다, 적어도 문이 열려 있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사람으로서 만약에 이런 취지가 고스란히 살아 있는 법이라면 저는 개정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고요. 저는 그 개정안에 반대할 제1소위 위원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이 내용이 뭔지, 갑자기 올라오는 법안에 대해서 어떤 것이었으며 개정 취지고 개정 내용이고 검토보고고 간에 전혀 알지 못한다는 상황을 설명드리고 싶었던 것인데 마치 제가 이 내용을 반대하고 상정을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것처럼 발화되어져서 사실관계를 되짚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다시 한번 의사진행발언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지금 안건 상정에 관해서 이견이 있으므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현재는 전체 위원들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상정에 관한 표결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해식 간사님께서……

○강명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진 잠시만요. 읽고 드릴게요.

○강명구 위원 거대 야당이라고 이렇게 밀어붙이면요 나중에 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옵니다. 이렇게 야당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이 부분을 직시하셔야 되지 이것을 표결로 하시겠다 그러면……

○위원장 김영진 간사님, 현재는 실제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건 관련해서는 법안 상정이고 상정 이후에 이 법률안에 대해서 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통해서 부정적이거나 반대 의견을 하면 그 시기에 부결의 의견을 가지고 논의해 나가면 충분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정부 조직을 운영해 나가면서 10월에 개청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여론, 여야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7대 범죄에 관한 좀 더 심도 있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공감대가 있고 그에 대한 법률적 정합성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있고요.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해식 위원 외 1인 서면동의)

(11시48분)

○위원장 김영진 실제로 9월에 추석연휴 등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논의해서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많은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서로의 양해를 요청했는데 반대 의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현재 이해식 간사님께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상정할 것을 요청하는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의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목록은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받으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건 받았고요.

국회법 제71조에 따르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의자 외 2인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의사일정 서면동의서에 동의자 외 찬성자가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서, 국회법 제71조 및 7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사일정 변경을 동의합니다. 대상 안건은 1번·2번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44.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는 위원 있음)

(일부 위원 퇴장)

두 번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61.

동의 사유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이 10월 2일로 임박한 상황에서 중수청 개청과 함께 관련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법률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9월 1일 동의자 이해식, 찬성자 채현일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강명구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오늘 같은 의결은요 여당 위원장님이시고 여당 위원님들도 다수당이잖아요? 야당에서 이렇게 반대하는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심사숙고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나중에는요 위원장님, 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옵니다. 우리 다, 역사적으로 다 되잖아요. 오늘 이렇게 많은 야당 위원들이 질의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강행처리한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식 위원 일정이 원내지도부가……

○위원장 김영진 의견에 대해서 일단 말씀 주시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했던 의사진행발언 중에 다 참조하고 법률안 심의 속에서 많이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명구 위원 상정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한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반대의견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관장 참석 관련해서 행안부장관 불참에 관한 여러 의견이 있는데 앞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주요한 사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시에는 각 기관장과 참석 예정자들은 반드시 참석해서 논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서면동의서에 동의자 외에 찬성자가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목록에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의사일정 제69항 및 제70항에 각각 추가하고자 합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안건 추가동의의 경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지요?

있으셔서 했기 때문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나뉘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토론 없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리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계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22인 중 출석 12인, 찬성 12인으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1시52분)

○위원장 김영진 법률안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제70항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 15일이 지나지 않았습시다만 중대범죄수사청의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정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써 우리 위원회에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표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9.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44)

70.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61)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69항 및 제70항 2건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받으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 나눠 드렸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법률안에 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별도 순서 없이 신청한 분에 한해 실시하고 시간은 정부 측 답변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해서 지금 대체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임호선 위원 자료 요구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있으시네요.

임호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 이 개정법률안을 저희가 논의하게 되는데 행정부에서는 2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연대에서 등에서 입법의견서를 낸 거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시행령이 이제 마련이 됐지 않습니까? 17조 2항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범죄의 성격, 사회적 파급력, 관련 사건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했을 때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를 인지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의 통보 요청을 할 수 있고 요청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항을 보면 1항에 따른 통보 대상에서 제외된 범죄에 대해서 법 43조 2항에 따른 범죄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법에…… 지금 저희가 법 43조 2항을 논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행령 2항이 제1항에 따른 통보 대상에서 제외된 범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43조 2항에 막힌 구조인지 그것에 대한 검토의견 하나 부탁드립니다요.

또 하나는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는 내용인데 시행령 22조 2항에 수사심의담당관이라고 하는 직제가 나옵니다. 법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정해서 이 사람이 뭐를 하나면 수사심의 종결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담당관의 신분제에 대한 문제, 직급을 어떻게 할 건지, 여러 가지 내부적인 지정 절차라든지 또 지휘·감독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마 검토의견이 있을 건데 이 법안을 저희들이 다루기 전에 그 자료를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박주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 지금 차관님 계시니까 차관님께 저도 요청을 드리는 바인데요.

어찌됐든 이 법안에 따라서 중수청법이 개정이 되면 중수청이 담당해야 되는 역할이 좀 더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7대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 요구가 들어왔을 때 수행하게 하면서요.

그러면 인력은 현재 생각하고 있는 인력으로 충분한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확인해서 다음에 법률심사 들어갈 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대체토론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시 정리하면 법률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70항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 15일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다만 중대범죄수사청의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정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써 우리 회의에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9항 및 제70항 2건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효율적인 의사를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의 토론은 두 분의 토론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서면질의가 없고요.

각 기관은 관련한 오늘 법안 통과와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 잘 준비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야 위원님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인사를 드리고 위원장이 간략하게 한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처리에 대해서 같이 동의해 주시고 합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전북 지역에 폭우 상황이 진행이 됐는데 먼저 1차 폭우에 따른 피해와 재난지역 선포에 관해서 여러 지역의 의견이 있어서 오늘 행안부차관께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거제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는데 통영시 전역에 할린 폭우에 공공시설 피해 64%가 미선포지역에서 발표가 됐고 통영시 2개의 읍면동만 선정했는데 사실은 추가적인 피해가 다른 지역에서 더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통영시에 관한 미선포지역에 대한 특별재난 재난지역에 대한 재선포와, 그것이 만약에 불가능할 시에는 선포지역 내에 그 지역의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등 주요한 복구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드립니다.

차관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장님, 말씀 주신 사항 저희가 잘 인지하고 있고요. 현재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피해지역의 피해규모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는 대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넘어갈 것으로 보여진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그러면 대통령님께 건의해서 통영에 대한 추가적인 재난지역선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거제 지역은 큰 섬 하나로 이어졌는데 통영은 섬들이 많기 때문에 조사하시고 선포 시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 추가조사위에서 피해액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관련해서 특별재난지역선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피해를 입은 통영시 지역주민들에게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전북 지역 관련한 폭우도 어제오늘 연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재난상황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가 잘 살펴보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및 법률안을 심사를 위해 출석해 주신 각 기관장과 기관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전체회의 일정은 간사님들과의 협의를 거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기관장님 및 보좌진 또 국회 수석전문위원님과 모든 직원 여러분, 보좌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 위원(19인)

강명구 권영진 김영배 김영진 김예지 박덕흠 박상웅 박정현 박주민 서명옥
양부남 윤건영 이광희 이상식 이해식 임호선 정춘생 주호영 채현일

○청가 위원(2인)

박홍근 용혜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전문위원 황승기

전문위원 김세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국가기록원장 이용철

정책기획관 이지성

자치분권국장 박연병

사회연대경제국장 이방무

균형발전국장 김군호

지방재정국장 정종훈

예방정책국장 하종목

재난관리정책국장 황범순

사회재난정책국장 김영빈

인사혁신처

처장 최동석

기획조정관 유승주

인사혁신국장 박성희

경찰청

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범죄예방대응국장 이승협

형사국장 정상진

생활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이서영

수사국장직무대리 박우현

소방청

청장 최용철

기획조정관 김재홍

화재예방국장 송호영

장비기술국장 김상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송상교

기획운영관 김준희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사무처장 박진

안전사회국장 우필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기획국장 김인수

임시회의록